

특집

⋮

정부의 가축분뇨 자원화 지원정책

1. 가축분뇨 자원화 현황

가. 가축분뇨의 자원화 형태

구 분	퇴 비	액 비
개별농가	• 텁밥발효축사 ◦ 비료화시설 ◦ 퇴비사 ◦ 건조장	◦ 저장액비화시설
축산단체	◦ 축분발효시설	◦ 분뇨공동저장탱크

〈처리공정〉

- 1) 퇴비 : 분뇨 + 수분조절제 (톱밥, 왕겨, 생석회 등) → 교반 또는 퇴적 → 발효 → (포장) 판매

- 2) 액비 : 분·뇨 분리 → 3단 저류 → 부숙 → 액비 살포 또는 2차 처리 후 방류

나. 퇴비화시설에 대한 법적 정화시설 인정

- 1) 환경처 오·폐수법령에서

톱밥발효돈사, 톱밥발효우사, 퇴비사, 건조식·교반식·통풍식 퇴비화시설을 정화시설로 인정('92. 3)

- 퇴비화시설 표준설계도 제작 : '92.7

2) '94. 5 입법예고된 오·폐수법시행규칙개정(안)에서 퇴비화, 저장액비화 시설을 설치한 농가에서 생산된 퇴비·액비를 초지·농경지 등에 살포하는 경우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정화시설에 두는 수질 관련 기술관리인 고용규정도 배제하였음.

다. 퇴비화시설 설치현황 ('93년말 기준)

1) 톱밥발효축사 등 퇴비화 시설 농가

〈정부지원 톱밥제조기 보유 농가 및 단체〉

· 대형(단체) : ('93) 11대/
개소당 3억원



김 창 섭

(농림수산부 축산국 가축위생과)

축종별	정화시설 설치 대상농가(호)	정하시설설치 농가(호)	설치농가중 퇴비화방법 설치농가(호)	퇴비화방법 점유율(%)
소	51,916	29,753	7,741	26
돼지	22,260	17,339	3,337	19
닭	4,916	3,531	3,263	92
계	79,092	50,623	14,341	28

* '94년말 현황은 현재 시군에서 전수 조사를 실시중에 있음.

〈시설별 정화시설 설치현황〉

구 분	기업규모	전업규모	부업규모	계(%)
개소				
퇴비사(퇴)	141	4,485	3,895	8,521 (17)
톱밥축사(퇴)	148	2,138	3,534	5,820 (12)
저장액비화(액)	397	4,450	1,795	6,642 (13)
활성오니(방)	205	237	-	442 (1)
간이정화조(방)(콘크리트)	84	3,636	13,622	17,342 (34)
기타(방)(FRP정화조등)	61	2,506	9,289	11,856 (23)
계	1,036	17,452	32,135	50,623(100)

* 예) : (퇴)→퇴비화, (액)→액비화, (방)→정화방류

- 소형(농가) : ('93) 43대 →('94) 30대/대당 8

백만원이하

※자담으로 구입한 농가 보유대수 제외

2. 자원화에 따른 문제점

가. 법령 및 제도상의 규제

1) 오·폐수 법령

- 저장액비화시설 및 분뇨공동저장탱크에서 부숙된 액비의 초기, 농경지 살포 규정 미비로 비 경제적인 정화처리 후 방류

2) 비료관리법령

- 축분을 이용한 부산물비료 생산 규제(비료제조업 허가)
- 부산물비료제조시설에 화

학기사 등 자체검사원 고용 의무화

- 가축뇨를 이용한 액비 규정 미흡

-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은 축분 발효퇴비의 상품표시 및 포장판매 제한

나. 가축분뇨의 퇴비화를 위한 톱밥 등 부자재 수급 한계

1) 퇴비화시설에서 소요되는 톱밥의 절대량 부족 예상

- 제재목 부산물로서의 톱밥은 수요급증과 지역간의 수급불균형 문제로 톱밥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음.

- '91년 : 2~3만원→'94년 : 5만원/톤

2) 톱밥제조시설 운영상의 문제

- 별채목의 수집 및 제재소

의 피죽(쭉데기) 확보를 위한 운반비의 과다소요

- 톱밥제조시설의 생산단가가 제재소에서 구입하는 톱밥가격보다 높음

3) 원료공급 및 톱밥 구입처 등에 대한 정보 미흡

4) 톱밥 수요증가와 관련하여 중간상인의 농간 내지는 매점 행위

= 비싼 톱밥의 이용은 생산비 상승요인으로 등장

5) 톱밥을 사용하지 않는 화학반응법 등 처리공법에 대한 기술 미흡

- 외국의 기술도입시 설치비용 과다

6) 왕거 등 톱밥대체품목 또는 발효톱밥의 재활용 저조

3. 자원화 대책

가. 오·폐수법령에 의한 축산폐수 자가처리규정 조속 제정(환경부 고시)

1) 액비생산을 위한 시설기준 및 살포지 확보절차 등

2) 부숙된 액비의 농경지 살포기준 및 방법

나. 비료관리법 개정추진 (주요골자)

1) 축분을 이용한 부산물비료생산업 허가제 완화(법)

- 등록 또는 신고제 전환

2) 비료관리법을 개정하여
가축분뇨를 액비로 인정

- 현행법에서도 「축산업 부산물」에 액비가 광의로 포함되어 있으나 명확한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법령에서 명시

3) 경종농가 보호차원에서
액비의 시용시기 및 시용량 등
을 지침으로 제정 운영

- 액비의 상품화를 위해 퇴비와 같이 공정규격을 정하기는 어려움

4) 자체검사요원 자격기준
완화(자검 고시)

- 시험연구기관 위탁검사 또는 자체검사소에서 일정기간 전문교육을 받은자의 자체검사원 인정('94. 11. 7 고시 개정완료)

5) 축산폐수정화시설중 퇴비화 방법을 이용하여 축산분뇨를 비료화 하는 농가에 대하여
비료관리법에 의한 부산물비료
생산업등록 기준 적용 배제(시행령)

확대

- ('94년) 9,538개소, 860억 원 → ('95년) 10,681개소, 1,095억 원

라. 톱밥 공급대책 추진

1) 톱밥은 가격에 비하여 부피가 커 물류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지역중심의 공급체계가 유지될 수 밖에 없음

2) 톱밥의 주된 원료인 제재부산물 또는 간벌목의 공급량에 한계가 있음

- 수입의 경우, 수송비 부담이 크며 식물검역상 문제 가 있음

→ 톱밥공급은 현재의 여건상 국내톱밥 생산능력(수입 목 포함)을 감안하여 수요를 제한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톱밥의 수급전망>

1) 공급 가능량 추정

- '93 총 공급량 : 1,426천톤

(제재부산물 : 680, 퇴죽

등 이용생산 : 746)

- 축산용 공급 : 577천톤
(총 공급량의 40%)

- 축산용 공급 가능량 추정
(원료목 이용 제조 및 타용
도 감소 등 감안)

- 약 800천톤/년(제재부
산물 300, 목재집하장 제
조 200, 기타 제조 300)

2) 수요량 추정(퇴비화시설
보급현황 기준)

- 농가 개별시설(14,341농
가) : 758천톤

단체 공동시설(16개소) :
72천톤

총 소요량 : 830천톤

- 농가의 톱밥이용은 부족시
소요량의 30% 정도를 대
체품목(왕겨등)이나 발효
톱밥을 재사용하여 충족시
킬 수 있음

→ 500~800천톤으로 현재
의 수요 충족 가능

3) 수급상의 문제

- 현재 기준으로는 수급상에

다. 자원화 시설에 대한 축산분뇨 처리사업비 우선 지원

1) 축산분뇨를 정화후 방류하는 정화조시설에 대하여는 정부 지원을 가급적 지양하고 퇴비화·액비화시설에 대하여는 지원을 확대

2) 축산분뇨처리 사업비의

톱밥 공급시설	추진 대책
(1) 제재소	◦ 제재소 인접지역 소요농가에 대하여 생산자단체 및 협업체가 중심으로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2) 임협 목재집하장 - 톱밥제공	◦ 축산단체의 축분발효시설등 대량 수요처와 직거래 ◦ 톱밥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물류비 지원 - 간벌재 수집·운반 장비 - 신규 톱밥제조시설의 수집·운반·가공 장비 ◦ 톱밥제조기 보유농가 및 단체에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안정적 공급 도모 ◦ 죽대기등 원료목 수집 및 수송비 일부 지원 ◦ 임협과 연계한 톱밥 원료목 공급계약 체결 ◦ 퇴비화시설 농가에 소형 톱밥제조기 지원
(3) 기타 시설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지만 지역간의 톱밥 수급 불균형으로 크게 가격차이가 나타남

- 금후 톱밥의 공급확대가 어려운 형편임을 감안할 때 톱밥을 이용한 퇴비화 시설을 계속 확대·보급하게 되면 수급의 불균형으로 톱밥가격 상승이 불가피하게 됨

〈톱밥 공급문제의 해결방안〉

1) 지역중심으로 생산자단체, 협업체 기능을 강화하여 톱밥생산자와 톱밥을 사용하는 양축농가를 연결시키도록 함
- 중간상인 매점매석 방지, 구입가격 절감, 안정적 공급 효과

2) 소형톱밥제조기의 지속적인 지원

- 농가 소형제조기 : 8백만 원/대당, 용자 100%

3) 톱밥의 수급·가격 정보 제공 및 지역별 수급안내도 작성

마. 톱밥공급의 한계성을 감안한 자원화 대책 추진

1) 톱밥을 사용하지 않는 시설 개발·보급

- 생식회를 이용한 회학반응 발효공법

- 고액분리후 고형분을 발

효·압착(펠렛화)하는 방법 도입검토

- 태양열 또는 폐타이어 화력을 이용한 분뇨의 건조 방법

2) 톱밥 사용량이 적은 퇴비화 시설의 보급

- 발효톱밥의 재사용 방식
- 톱밥 등 수분조절제가 적게 사용되는 스크레파식 돈사 보급(슬러리 돈사는 살포기가 확보된 농가에 한하여 설치토록 권고)

- 태양열 등을 최대한 이용한 축분발효시설의 설치로 톱밥사용량 감소 유도

3) 톱밥대체품목(왕겨, 분쇄왕겨, 대패밥 등) 사용시험 실시 후 농가보급

4) 부숙액비의 농지환원을 위한 농가간 협조체제 구축

- 축산농가로 하여금 일정규모 이상의 액비 살포농지(초지) 확보 권고

- 액비 살포방법, 시기 등에 대한 교육·홍보 실시로 인근주민 민원해소

5) 발효퇴비 유통의 활성화

- 유기농업협회와 퇴비화시설 농가간 계약·판매

- 과수·원예농가와 축산농가간 직거래체제 구축

6) 발효퇴비의 사료화 이용으로 사료 및 톱밥공급량 절감

7) 톱밥을 사용하지 않는 외국의 발효공법기술 검토 및 톱밥사용량이 적은 퇴비화 공법의 개발 보급(연구용역 사업 계속 실시)

바. 개정되는 오·폐수법령 중 자원화 시설에 대한 홍보 강화

1) 정화처리 후 방류하는 시설에 대한 규제 강화

2) 퇴비·액비화 시설 설치 시 규제 완화

- 퇴비·액비의 토양환원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 배제 및 기술관리인 고용의 무면제

- 축산단체가 설치하는 축분발효시설 등 공동처리시설 이용농가에 대한 개별정화 시설 설치 면제 등

<제도개선 참고자료>

- 고상식 계사의 정화시설 인정(환경처, '89. 11)
 - 건조사가 있을 경우 별도 정화시설 불요
※ 육계농가의 경우 계사내에서 계분의 발효처리시 정화시설 불요('92. 3)
- 발효 계분 및 돈분의 비료원료 판매허용 ('90. 1)
 - 축산농가에서 생산된 퇴비를 비료제조업 허가 없이도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 단, 상표 표시를 할 경우에는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함.
- 정화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허가시 대체 농지 조성비 면제조치
 - 돈사 및 계사의 부속시설인 정화시설을 양축시설로 인정('90. 12)
 - 생산자단체가 축산분뇨공동철시설(축분 발효시설) 설치시 농업진흥구역 밖 5,000 m²까지 조성비 면제('92. 12)
- 축산폐수처리시설 자금 융자 금리인하(재무부 '91. 7) : 8%→3%
- 축산폐수 퇴비화 방법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환경처, '92. 3)
 - 톱밥발효돈사 및 우사 등 톱밥을 이용한 퇴비화시설 세부지침 확정
- 축산폐수 퇴비화방법 표준설계도 제작, 무료 배포('92. 8)

- 축산농가 설계비 절감 : 농가당 100~200 만원

- 정화시설 설치기간 단축(15일 정도)

- 가축분뇨의 지원화 활용 유도

- 축분발효시설(유기질비료 제조공장) 설치 규제 완화('92. 5~'93. 5)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개정 : 경지 및 산림보전지역내 신규설치 허용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개정 : 수도권지역내 신규설치 허용('94. 7 개정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포함)

- 비료관리법시행규칙개정 : 부산물비료제조시설 실험실 설치규정 삭제

- 허가대상농가의 축산폐수정화시설 시공 완화('93. 12)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자가 설계 시공 허용

- 부산물 비료제조시설에 두는 자체검사원의 자격기준 완화('94. 11)

- 국립농업자재검사소의 고시개정으로 자체검사소의 교육이수자를 자체검사원으로 인정하고 검사요원을 확보하지 못한 업체의 경우 위탁시험 허용

